

배포 2024. 12. 26.(목)

보도시점

(인터넷) 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지 면) 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 내 분교 설치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 공포 1년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 : 공포 후 즉시/ 시행계획·예방계획 : 제5차(25~29) 기본계획부터 적용)

교육감이 주관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1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였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됨을 명시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7> 고등교육법(시행 : △수능 관련 - 2026년 3월 1일 / △외국인 유학생 - 공포 후 6개월 / △대학재정지원사업 - 공포 후 즉시)

① 수능 관련

수능-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③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 회복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10>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즉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1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교과서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이 필요한데, 전·현직이사 측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는 “이미 검토에 통과한 '25년 적용 검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는 한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관영 (044-203-6170)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3-6173)
<학생맞춤통합 지원법>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책임자	과 장	하진혜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525)
<학교폭력 예방법>	학생건강정책관 학교폭력대책과	책임자	과 장	박혜원 (044-203-6972)
		담당자	사무관	이유림 (044-203-6978)
			사무관	정민재 (044-203-6975)
<도시형갬퍼스법>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	책임자	과 장	조훈희 (044-203-6636)
		담당자	사무관	박형명 (044-203-6641)
<폐교활용법>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	책임자	과 장	조훈희 (044-203-6636)
		담당자	사무관	박형명 (044-203-6641)
<학교복합시설법>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	책임자	과 장	배정익 (044-203-6299)
		담당자	사무관	변정을 (044-203-6318)
<교육기본법>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혜진 (044-203-6480)
		담당자	사무관	채시은 (044-203-6494)
<고등교육법>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책임자	과 장	임소희 (044-203-6885)
		담당자	사무관	정예영 (044-203-6890)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책임자	과 장	신미경 (044-203-6770)
		담당자	사무관	제유진 (044-203-6766)
		책임자	과 장	박성하 (044-203-6232)
<학교안전법>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용하 (044-203-6657)
		담당자	사무관	이인혜 (044-203-6662)
<대안교육 기관법>	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책임자	과 장	하진혜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44-203-6531)
<사립학교법>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책임자	과 장	이운식 (044-203-6907)
		담당자	사무관	노현정 (044-203-6903)
<초·중등교육법>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465)
		담당자	서기관	한성태 (044-203-646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지원대상학생”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3.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4.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평가 및 조사·연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와 교원 등은 보호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5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제8조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보급
6.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센터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5.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지원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지원센터간의 연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 및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선정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6.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8.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9.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관리 관련 지원
10.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제공·관리하는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원회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방법·절차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학생별 지원·관리)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제공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관리

②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연수)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방지와 아동에 대한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2.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 재입학, 진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각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연계·가공한 정보
7.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③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해당 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⑦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기간, 개인

정보 취급 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국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 내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 관은 관계 <u>중앙행정기관</u>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중앙행정기관, 특별시</u> <u>·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u> <u>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u> <u>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u> <u>라 한다)</u> ----- ----- 1. ~ 6. (생략) <u><신설></u>
1. ~ 6.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u> <u>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u> <u>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u> <u>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u> <u>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u> <u>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u> <u>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u> <u>다.</u> ④ <u>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u> <u>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u> <u>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u>
<u><신설></u>	

③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시·도교육청-----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감-----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 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신 설>

<신 설>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⑤ (생략) <u><신설></u>	-----. ⑩ (현행 제5항과 같음) ⑪ <u>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폭력 조사·상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3**「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2. “도시형캠퍼스”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3. “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4. “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칭)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형 및 종류) ①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2.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제7조(교육과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1조(학교급식) ①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

제12조(학교운영의 통합·분리) ①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 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설립·운영 중인 공립학교의 분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본다.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31 -

붙임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신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신설>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시설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생략)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감독기관장등-----

2. 감독기관장등-----

② -----감독기관장등-----

③ -----

-----감독기관장등-----

④ -----

-----감독기관장등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전단 신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생략)
<신설>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하는 경우 -----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용도의 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
-----.

② 운영관리자-----

③ 운영 관리자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생략)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④ 운영관리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관리자-----

-----.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 ① -----

---연구·자문 등의-----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
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
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
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
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업무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
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

감독기관장등-----

-----.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
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u>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u> <u>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u> <u>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원) ① (생략) <u><신설></u> ② ~ ⑥ (생략)	제14조(교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u>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② (생략)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 ⑨ (생략)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

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 이후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

(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검토·자문·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신 설>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① ~ ② (생 략)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에-----

 -----.

④ 제3항에-----

 -----.

제64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u>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사업의 안내)</u>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u>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 법인의 정상화) ① (생략) <u><신설></u>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 법인의 정상화) ① (현행과 같음) <u>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 1. <u>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 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 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 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 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 수로 본다.</u> <u>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u>

<신 설>

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
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
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
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

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② (생 략)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u>다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할 것</u>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4항-----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신설>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
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 · 저작 · 검정 · 인정 · 발행 · 공급 · 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 제1항에 따른 -----

-----.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
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
용함으로써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④ ----- 저작 · 검정 · 인
정 · 발행 · 공급 · 선정 -----

 -----.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저작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u>제29조제1항</u>·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u>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 ----- ----- -----<u>제29조제3항</u>----- ----- ----- -----. ② (현행과 같음)
---	--